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69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김영실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를 해체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불필요한 해체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해체에 대한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규정함. (안 제9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연면적 1천㎡ 이하의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해체 시 현행 허가 사항이었나 신고 대상으로 개정하여 해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절차 단축 및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70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김지훈(국)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교통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병역명문가 등 사회에 기여한 시민과 자원봉사 우수자, 임산부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공공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족친화적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배려 전용주차 구획 설치 기준 마련 및 설치위치, 이용대상 및 표시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31조의2 및 안 별표9)

○ 장기복무 제대군인, 임산부, 병역명문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안 별표 1, 별표 1의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가족 배려 주차장 조성을 통해 자녀 양육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 임산부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대상에 신설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와 예우를 강화하였고, 공영주차장과 공공 부설주차장의 감면대상을 일치시켜 혼란을 해소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저출산 대응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사회의 공공 가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771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박경원 의원 등 13명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참여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주택지구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시장의 책무 마련(안 제3조)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안 제4조)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 규정(안 제5조)

○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 규정 마련(안 제6조)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 편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된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알선, 고용추천, 소득창출 사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 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갈등 해결, 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본 제정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왕숙지구 및 양정역세권 등 남양주 행정구역 내에서 활발히 공공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 공동체 보호와 주민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1부.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772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이진환 의원 등 13명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나 정책 실현이 전무하고, 국가 및 광역단체의 유사 정책과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저하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었기에,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남양주시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등 전 산업 분야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이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관련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최초 구성후 임기가 만료된 21년 2월에 종료되어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조례에서 정한 각종 사업 추진은 전무한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조례 유지에 따른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73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이수련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 시설의 현대화, 소비 활성화, 인력 양성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 이러한 지원은 화훼산업이 직면한 정주 여건 악화, 낙후된 인프라,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 환경적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생산 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화원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 (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이 직면한 정주 여건 악화, 낙후된 인프라,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사업 및 교육 훈련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화훼 사용 및 생화 사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규정하였며,

안 제7조에서는 우수화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화훼 생산 확대 및 품질향상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 남양주시 화훼 재배 면적 및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 8.9헥타르에서 2023년도에는 5.8헥타르로 크게 감소하였고, 농가 지원에 대한 시 예산 또한 22년 6개 사업 974백만원에서 24년 5개사업 539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화훼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74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이상기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농촌 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농업기계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 농기계에 대한 무상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농기계의 청소·세척 후 수리를 신청함으로써 수리 효율을 높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반서비스’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6호)

○ 무상으로 임대 농업기계 운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반서비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 농업기계 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 및 세척 후 수리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제5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대여받더라도 고령 농업인이나 소규모 농가는 농기계를 직접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농업 생산성 저하와 함께 별도의 차량 임차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대 농기계에 대한 무상 운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농기계의 청소·세척 후 수리를 신청함으로써 수리 효율을 높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함께 생산성 향상 및 임대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농민 친화형 서비스 제공에 부합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75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김상수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상의 맨홀뚜껑이 이탈하거나 개방되어 시민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로에 설치된 맨홀 등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및 침수 등으로 인한 맨홀 추락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필요성이 매우 큼에 따라 시민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맨홀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를 제도화함으로써,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88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교통지원을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규정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 이동편의에 기여

나. 주요내용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신설(제14조제2항제2호)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현행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에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든 임산부로 확대 개정함으로써 저출산 대응은 물론 임산부의 안전한 이동 보장과 교통약자 복지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임산부의 편의 도모를 위해 보건소 및 병원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심 사 보 고 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 안 번 호	789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관리기간의 종료시기(‘25.11.6.)가 도래함에 따라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게시대 관리업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①위탁사무 내용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 현수막 게시신고 업무 대행(탈·부착 작업 포함)
-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
- 표시기간이 만료된 현수막 정비
- 기타 市에서 협약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등

②위탁사무 개요

○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권 역	게시대수	해당지역
계	183	
제1권역	70	금곡동, 평내동, 별내면, 별내동, 수동면, 조안면, 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
제2권역	57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퇴계원읍
제3권역	56	와부읍, 화도읍, 호평동

○ 위탁기간 : 2025. 11. 7. ~ 2028. 11. 6.(3년)

○ 선정방식 : 모집공고 후 권역별 1개 법인・단체 선정

○ 위탁비용 : 없음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게시대행료를 통해 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충당

	게첨기간	법정수수료	게시대행료 (부가세포함)	합 계	비 고
현수막 게시비용	7일	3,000원	7,700원	10,700원	

③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남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19조의2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게시대의 파손과 고장을 방지하고,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사무로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경제적 효율성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전문적 관리를 통해 공공 운영 대비 예산 절감 가능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현수막 게시 신고 업무 대행에 대한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 가능

구 분	검 토 의 견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분기별 게시 실적 보고를 통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불법현수막 게시 방지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민간 위탁을 통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로 불법 현수막 게시 억제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종 합 의 견	안정적인 현수막 게시 업무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 등 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민간위탁 관리 사무의 재위탁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9. 재위탁 사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통한 편리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

○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예산 절감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유지보수 장비 보유)

10. 향후계획

○ 2025. 10. :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위탁 동의안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183개소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위탁기간은 ’25년 11월 7일부터 부터 ‘28년 11월 6일까지 3년이며 위탁 비용은 별도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으며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통해 발생되는 게시 대행료가 수탁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되며 법정 수수료는 시의 세외수입 조치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 위탁을 통해

관리 비용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심 사 보 고 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790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김상수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기간의 종료시기('25.10.25.)가 도래함에 따라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①위탁사무 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남양주시 관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②위탁사무 개요

○ 위탁시설 : 없음(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위탁)

○위탁기간 : 2025. 10. 26. ~ 2028. 10. 25.(3년)

○ 선정방식 : 모집공고 후 1개 법인・단체 선정

※ 위탁받을 자의 자격 :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 위탁비용 : 없음(안전점검 수수료 수탁기관 귀속)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9조의2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옥외광고물 등의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제공되는 사무로 안전점검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경제적 효율성	○ 옥외광고물 등의 내실있고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공공 운영 대비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옥외광고물 등의 전문적인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안전점검 업무 추진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지도,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남양주시 구현에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투명성 확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장비, 인원을 보유한 법인·단체의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인 안전점검으로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선제적 대응 가능

구 분	검 토 의 견
종 합 의 견	안정적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 등 업무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민간 위탁 사무의 재위탁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재위탁사유

-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안전점검 업무 수행

전문 장비를 활용한 실질적인 검사를 통해 정확한 안전진단 가능

조기 안전위해요소 발견 및 조치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

- 전문적인 안전점검 업무 체계 확립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위탁 동의안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옥상간판과 일정 규모 이상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점검 수준 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심 사 보 고 서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791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2024.06)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신규 및 우선순위 지역인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필요

○ 역사문화·자연생태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방문 요충지로서 지역자원을 특화하고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진접읍 팔야리 797-10 일원 A=200,274㎡

○ 사업기간 : 2026년 ~ 2029년(4년)

○ 총사업비 : 351.49억원

- 마중물 사업 : 257.13억원(국비 142.86, 지방비 95.24, 자체지방비 19.03)
- 지자체 사업 : 10.54억원
- 부처연계사업 : 83.82억원(국비 16.76, 자체지방비 25.15, 공기업 41.91억원)

○ 주요 추진 사업 : 단위사업 5개(세부사업 총 12개)

- 마중물 사업 : 핵심사업 3개 (세부사업 총 8개)
- 지자체 사업 : 지역관리사업 1개 (세부사업 총 3개)
- 부처연계 사업 : 부처연계사업 1개

○ 그간 추진사항

- 2024. 9.
  - ·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 · 부지미확보로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전적격성 부적격
- 2025. 5. : 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부지매입비 : 40억원)
- 2025. 7. :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국공유지 부지매입 기준 완화)

○ 활성화계획 사업총괄표

구 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총 계			351.49	
마중물 사업	A. 역사·자연이 숨 쉬는 치유마을 만들기	A1. 왕의 별빛 쉼터 조성사업	98.42	광릉장 일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역사·자연 테마 여가활동거점 조성
		A2. 왕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	25.64	공동체정원을 활용한 숲치유 테마 야외정원 및 온실 조성
		A3. 치유마을 조성사업	7.08	주민생활건강 · 활동을 위한 야간경관개선
	B. 활력있는 전통시장 및 상권 만들기	B1. 광릉장 역사플레이스 조성사업	40.47	역사문화 스토리를 반영한 광릉오일장 장소화 및 다양한 공간이벤트를 위한 다목적 광장 조성
		B2. 광릉내로 힐링상권 조성사업	38.85	노후된 지역상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방문객 유입을 위한 상권입면 및 보행환경개선
		B3. 광릉오일장 및 상권 홍보·마케팅사업	9.9	지역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및 홍보·마케팅
	C. 함께 가꾸는 골목길 만들기	C1. 커뮤니티 보행안전가로 조성사업	27.64	광릉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보행환경개선 및 주거지 골목환경 정비
		C2. 커뮤니티 힐링문화 네트워크사업	9.13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및 내집앞, 골목 화단가꾸기 등 주민참여 골목환경개선 사업
	소 계		257.13	
지자체 사업	D. 지역관리사업	D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조성사업	7.36	팔야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현장 소통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운영
		D2. 주민주도 특화마을조성 기반구축사업	1.48	도시재생대학 및 선진지 답사·워크숍, 마을축제 기획 등 주민이 직접기획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운영사업
		D3.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	1.70	지역의 변화과정 및 사업추진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도시재생사업 아카이빙
	소 계		10.54	
부처 연계	E. 부처연계·기타사업	E1. 광릉내로 지중화사업	83.82	광릉내로 힐링상권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지중화 사업
	소 계		83.8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의견 청취안은 지난해 제306회 임시회(2024.9.)에서 의회 의견 청취한 후 국토부 2024년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나 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미선정되어 이번에 재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사업 내용은 진접읍 팔야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51억4천9백만원으로 지난번 사업비(372억2천5백만원)보다 20억7천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A-1 왕의 별빛쉼터 조성사업에 하천부지를 제외한 사항이며, 그 외의 마중물, 지자체, 부처연계사업 등 12개사업도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금번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40억원을 확보하여 국유지의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부지 미확보로 부적격 평가를 받은 만큼, 관련 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본 사업의 목적인 지역자원을 활용해 쇠퇴된 상권 활성화와 노후 주거환경정비 등 지역발전을 이끌수 있도록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1부.

심 사 보 고 서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792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5. 9.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사회적·시간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비구역 지정 방식 변경(주거생활권 계획 도입)

(현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가능 * 현재 14개 정비예정구역(7개 정비구역 포함) 지정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주민 의사 반영 어려움 • 원도심 전반 노후화로 일방적인 정비예정구역 지정 한계

⇓

(변경)	- 주거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도 50% 등 요건을 갖출 경우 주민이 요청(제안)하여 정비사업 추진 가능 • 주민 주도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 • 주민 의사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가능 ※ 주거생활권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 및 도시 특성·성격 등에 따라 원도심을 중심으로 총 19개 주거생활권 설정(와부 1개소, 진접 4개소, 화도 4개소, 진건 2개소, 오남 2개소, 호평, 평내, 다산, 금곡, 퇴계원, 별내 각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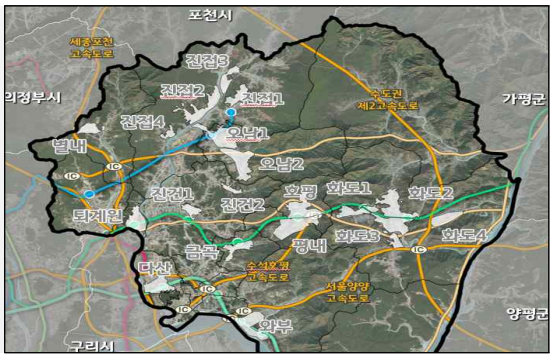

○ 용적률 체계 재정비

(현황)	- 획일적*이고 제도적·사회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인센티브 기준 *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1단계 종상향만 허용 •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난항 • 제도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 개선 필요

⇓

(변경)

- 주거환경정비 필요성이 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지역 2단계 종상향 허용
  - 용도지역 상향은 1단계 상향이 원칙이나, 역세권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과 연접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단계 종상향 허용
  - 용적률 기준

구 분	기 정		변 경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200%	180%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	250%	21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300%	230%(210%)	300%(280%)
준주거지역	350%(230%)	500%(300%)	350%(270%)	500%(36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단계 종상향한 정비사업의 기준용적률(순부담률 15%)
  * 준주거지역 ( )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순부담률 20%)

- 인센티브 용적률 다양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생 유도
  - 인센티브 기준

구 분		완화율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시설 부지 등 제공	제한없음	유지(대지면적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 기존 산식에 따라 완화용적률 적용)
주거환경 및 지역상생 완화 (최대 상한 용적률의 10%)	소형분양주택 확보	10%이하	유지
	장수명주택인증	15%이하	인센티브 상향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7%이하	인센티브 상향
	녹색건축인증	5%이하	유지
	지능형건축물	5%이하	유지
	층간소음해소	5%이하	신설
	BF인증	5%이하	신설
	CPTED인증	5%	신설
	공개공지 조성	5%	신설
	공공보행통로 조성	5%	신설
	단지 내 생활SOC	5%이하	신설
	지역업체 참여	11%이하	신설
	주민참여비율	5%이하	신설
	부설주차장 확보	15%이하	인센티브 상향

○ 정비예정구역 변경

-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을 유지하고 미추진 정비예정구역은 해제(주거생활권계획 반영)*

  *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라 향후 주민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가능

  • 정비예정구역 변경 조서

연번	구역명	사업 유형	기정		변경		비고
			단계	면적(㎡)	단계	면적(㎡)	
1	진접7	재건축	2단계	10,812	-	-	해제(주거생활권계획 반영)
2	오남1	재건축	1단계	99,413	2단계	99,413	추진상황 고려 단계조정
3	호평1	재개발	3단계	19,708	-	-	해제(주거생활권계획 반영)
4	평내1	재건축	1단계	60,045	1단계	60,045	
5	평내2	재건축	1단계	39,162	1단계	39,162	
6	금곡2	재건축	1단계	19,166	1단계	19,166	
7	금곡5	재건축	2단계	10,088	-	-	해제(주거생활권계획 반영)
8	금곡6	재개발	1단계	25,372	1단계	47,440	구역 확장(연접 유사여건지역 포함)
9	금곡7	재개발	1단계	15,269	1단계	15,269	
10	퇴계원1	재개발	1단계	25,152	1단계	25,152	
11	퇴계원2	재개발	1단계	19,383	1단계	19,383	
12	퇴계원4	재개발	1단계	26,593	1단계	26,593	
13	퇴계원5	재개발	2단계	14,045	2단계	19,180	구역 확장(진출입로 여건 개선)
14	퇴계원7	재개발	1단계	10,884	1단계	10,884	
계				395,092		381,687	14개소 → 11개소

추진경위

○ 2024. 6. 17.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

○ 2024. 7. 15. : 착수보고회 개최

○ 2024. 8. 14. ~ 9. 2. : 주민 설문조사 실시(928명 참여)

○ 2025. 7. 3. : 중간보고회 개최

○ 2025. 7. 11. : 주민공람 공고(공고기간 7. 11. ~ 7. 28., 18일간)

○ 2025. 7. 11. ~ 8. 5. : 관계부서(기관) 협의[43개 부서(기관) 협의 완료]

○ 2025. 7. 21. ~ 7. 23. : 주민설명회 개최(남양주시청 다산홀 등 3회 개최)

향후계획

○ 2025. 10.

-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의견 청취안은 2020년 12월에 결정 고시된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5년이 경과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타당성 검토 시기가 도래되어 개정 법령 및 정책, 지역여건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주요 변경 내용은 (1) 당초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에서 주거생활권 계획으로 변경하여 주민 주도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2) 용적률 체계를 재정비하였는데 당초 지역여건에 관계없이 1단계 종상향만 허용했던 획일적인 인센티브 방식을 주거환경정비 필요성에 따라 2단계 종상향을 허용하게 하고, 14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상생 유도 인센티브 항목 중 8개는 신설하고 3개는 상향시켜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 항목을 선택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으며, (3) 당초 14개 정비예정구역중 사업을 미추진 중인 3개소는 주거생활권 계획에 반영하고 11개소만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동안의 변화된 법규와 제도를 반영하고, 도시화에 따른 적정한 용적률을 정비하여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거생활권이라는 유연한 정비사업의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권역별 계획 수준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부.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94

2025. 9. 17.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5. / 김지훈(민)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 2025. 9.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9. 1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이 실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예외 대상 확대 및 기준 완화 사유를 추가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창고시설 건축 시 적용되는 요건의 예외 대상 확대(안 별표1의3 제2호)

○ 기준 완화 사유 추가 신설(안 별표1의3 제3호)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3」제2호 세부항목 2에서 농업용 창고시설인 경우에 한정하여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였는데 같은 1차 산업군인 임업·축산업·수산업도 포함시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 또한 제3호 세부항목 4에 공원녹지, 산지 등으로 분리 및 차폐 되는 경우를 신설하여 경관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